

# 건축설계경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The Problem & Course of Development in the Design Competition

## 설계경기에서 건축사의 역할

The Architect's Role in the Design Competition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설계경기 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설부에서는 지침을 마련,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의 불균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국제화, 개방화에 빌미로 설계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므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요자에게는 좀 더 나은 양질의 설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의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다.

이에, 본지에서는 설계경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역할을 짚어보고, 그 문제점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趙仁淑/다리건축사사무소

by Cho, In-Souk

설계경기의 목적은 발주자 쪽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설계자를 결정하는데 있다. 좋은 아이디어란 물론 발주자측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한 안이 될 것이고, 그 쟈을 낸 설계자가 용역권을 부여받게 된다. 때로는 적합한 설계자가 미리 정해지면 그 설계자의 안이 채택되기도 한다. 특히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경우 대개는 설계자 결정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설계경기는 엄밀히 말해서 Idea Competition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설계경기에서 당선작이 발표되면 우선 발주처와의 관계를 한번쯤 의심해 보게 되고 아니면 심사위원쪽에 의혹을 두곤해 왔다. 당선작은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돌 붙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이었다. 소위 말해 발주처 마음에 드는 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보는 사람 눈에 맞을 듯한 알록달록한 조감도를 서슴지 않고 내놓았던 것이다. 이는 발주처가 서울 이외의 지역의 경우 더욱 심하다. 지난 8년간 여러차례 설계경기에 참가했었는데 거의 100% 실패를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평상시에 조금 생각을 해보았다.

건물신축 내지는 종합계획 수립의 요구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기획을 하고 소위 말해 프로그래밍 작업을 거쳐 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설계경기 전단계의 진행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 조언을 구하게 되거나 건축사가 일이 필요하거나의

### ■ 설계경기에서 건축사의 역할 / 조인숙

### ■ 설계경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김석환

### ■ 신트리지구 설계경기 심사 참가기 / 김인철

경우다. 누군가에 의해 일이 되어져야 하므로 결국은 가까운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다. 웬만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한두번씩 발표되는 공모(안)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게 마련이다. 결국은 발주처와 당선자는 대개 먹이사슬의 고리에 얹혀져 있게 되고 그 일은 따내거나 주거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가끔 자유직업인들을 비교할 때 고객은 의사나 변호사에게는 일을 의뢰하는 것이고 건축사에게는 일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여기 퀘메라 저기 퀘메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면서 건축사에게는 아래라 저래라가 다반사고 건축사 자신들도 겉으로는 (속은 모르겠지만) 하라는대로 하겠다는 (?) 자세가 되어있는 것이다. 특히 발주처의 담당자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므로 의무조항은 뒷전이고 마치 자기집 짓듯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Idea Competition 응모자격에 이상한 자격제한이 붙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모 현상설계의 경우 자격제한에 「도시계획,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등록업체와 건축사사무소 등록자」가 공동응모를 하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설계경기를 통해 필요한 사항과 설계를 해 나가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현황측량이니, 지질조사니, 도로개설 또는 도시계획변경 등의 기술적인 사항이 과연 현상설계를 통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인가? 게다가 대표자는 또 무엇인가?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처하여 대형업체들은 이런 실적들이 있는 회사들을 사서 실적을 보유하게 되고 이런 횡포는 점점 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 머지않아 건축사가 독자적으로 현상설계에 응모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업체가 관청에로비하여 응모자격 제한을 해 버리면 아주 간단한 것이다. 아무리 작은 건물의 설계에도 「...공항분야 신고한 업체」라는 조항이 붙으면 꼼짝못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건축사를 단지 도장을 찍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값이 싼 건축사를 회사에 보유하고 마치 기술자 백화점처럼 구색맞추어 관공서에 고개를 들이미는 것이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들은 한 회사로 구성은 되어 있되 부서별로 독립채산제이며 회사에 세를 내고 운영을 하는 현실이다. 영세한 설계업체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형태라 보인다.

요즘들어 대형그룹들은 이런 업체들의 실적을 사들여 직영을 하기도 한다. 이미 기업이 되면 목표는 분명해진다. 매출신장과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가 된다.

건축물 Idea Competition 응모자격에 매출신장과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업체들로 제한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재고해 볼 문제다. 건축가에 의해 Master plan이 수립된 후 기술적인 사항은 해당기술사들이 조언을 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웬 기술사들은 종류가 그리도 많은지 걸핏하면 “기술사

보유업체...” 이러다보니 기술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 건습생들은 자격증 따내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자격보유자의 약 50% 정도가 관공서 재직중이고 이들이 퇴직후 평소 거래처인 개인기업에 들어가 역시 관공서 상대로 일을 하게 되니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건축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와서는 점점 도장찍거나 감리하는 일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름대로 설계경기 운영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은 이렇다. 관공서에서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또는 단지조성하고자 할 때 전문가가 있는 어떤 전담조직에게 총괄의뢰를 하여 일의 순서를 객관화 한 후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불잡고 앉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가까운 사람과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앞서의 예와 같은 얼토당토한 자격제한이나 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나중에 가서는 대표자 계약금액 제한까지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담 조직에 넘기게 되면 그곳에서 프로그램 용역에서부터 필요한 단계와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서 현상설계로 할 일인지, 전작업인지 후속작업인지 일의 성격에 따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분류가 되고 건축사가 할 일인지 엔지니어링이 할 일인지가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나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설계경기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공서의 경우 건축주 측은 의견반영을 하면서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세금쓰는 것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상설계시에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두고두고 말썽이 된다.

애초에 잘못되어져 있는데 공정한 심사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심사야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공무원 수가 월등히 많으면 대학교수들 틀러리 세워 합법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이권때문에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건축사는 관공서의 시녀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옳게 제안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차츰 사회는 밝아지리라 생각한다.

소신껏 일한다고 설마 밥값는 건축사야 생기겠는가?

일을 따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혈안될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